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일련의 건의안을 발표하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건의안

"Wilson-Pakula" 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후보들이 예비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

유권자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부패를 줄일 수 있도록 정당 등록 마감 시한을 변경하려는 건의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선거 과정을 강화하고 공직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건의안과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개혁안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새로운 독자적인 수사본부에게 선거법 위반 사항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별도로 활동할 권한을 갖게 되며, 선거법 위반을 조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주지사가 건의한 개혁안은 부패를 예방하고, 투표 선택을 확대하고, 후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으려면 후보자가 정당 대표의 승인을 얻도록 하게 한 "Wilson-Pakula" 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후보들이 예비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 개혁안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당 등록을 변경하고 같은 해에 이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 선택을 늘려주고 선거 참여율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지난 주, 주지사는 정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사처벌을 건의하였습니다. 추가 개혁안이 건의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선거 제도는 뉴욕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장려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의한 이 개혁안은 후보자들이 다른 정당의 표를 얻기 위해 자금을 대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당 등록을 변경한 후 같은 해에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 예방과 민주주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Korean

나아가, 오늘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 못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뉴욕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본부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수사본부

각 주요 정당이 고르게 임명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건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기소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할 새로운 독립된 수사본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건의에 따라 새로운 독자적인 수사본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주지사가 선거법집행단 총책임자를 선발하고 상원의 승인을 얻는다. 선거법집행단 총책임자는 수사본부 내에서의 인사 결정에 단독 권한을 가지며 당파심보다는 개인의 장점을 바탕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 선거법집행단 총책임자는 소환권과 함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고 기소할 권할을 갖는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현재 형사 사건 위반 사항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새로운 선거법집행단 총책임자에게 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지만, 그에게 이러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투표할 수 있다. 일단 조사가 완료되어 선거집행단의 조사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전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결에 따라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올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9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선거법집행단 총책임자는 이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새로운 수사본부에는 선거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법을 집행할 상당한 수사 인력과 변호사들이 포함된다.

Wilson-Pakula 요건 삭제

1947년의 Wilson-Pakula 법안의 결과, 다른 당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해당 정당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후보들이 정당 지도자를 설득하기 위해 기부금과 모금 약속을 하여 허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패와 부패의 모습을 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주지사의 건의에 따라 후보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로 나설 때 정당 지도자들의 허락을 얻기 보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Wilson-Pakula 요건이 폐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패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소속 정당원이 아닌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더 큰 선택의 범위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제 때에 정당 등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다

주지사의 건의로 부패가 줄어들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당 등록 마감기한이 변경될 것입니다. 뉴욕의 현 정당 등록법은 필요없이 부담스럽고 대부분의 다른 주들의 유사한 법들과도 잘 맞지 않습니다. 현재, 유권자 또는 후보가 정당 등록을 결심하는 경우 이들의 등록은 다음 총선이 실시되는 해까지 유효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1년 동안 이들이 가입하고 싶어하는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사실상 곧 있을 선거가 실시될 해에 출마하고자 하는 잠재적 후보들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으며, 대신 Wilson-Pakula 증서를 통해 라인을 공고히 하려면 당 관계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의 건의로 이러한 요건이 삭제되게 되었고, 대신 유권자의 정당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3개월 후에 효력을 갖게 되어 당 관계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의로 유권자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그들의 투표가 실제로 집계되는 선거 이전에 새로 정당 등록을 하거나 곧바로 정당 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뉴욕의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 지명 선거와 총선 경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의 현 정당 등록 법규는 미국의 다른 어느 주보다도 유권자에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유권자의 정당 등록을 추적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는 유권자에게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당 등록 변경을 쉽게 하여 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이 정당 등록에 사전 마감기한을 둔 주 가운데 세 개의 주만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등록 마감기한에 앞서 정당 가입 마감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마감기한도 선거일 이전에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뉴욕주만이 정당 등록 신청서 제출과 상관 없이 선거일 이후에만 유권자(또는 후보자)의 정당 등록 변경이 효력을 갖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